

1.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

소방청에 '20년 소요정원으로 감사·감찰인력 2명(소방위 1명, 소방장 1명)과 정보보안 전담인력 1명(7급 1명), 산불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·분석 등을 위해 인력 4명(산림청소속 6급 4명)을 증원하고, 119구조구급국(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) 의사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등 업무난이도를 고려하여 인력 1명 직급조정(5급→4급 또는 5급) 하는 한편,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증원한 5명(소방교 3명, 소방사 2명)을 신규인력 평가대상 정원으로 신설하고, 어려운 용어(성상 → 성질 및 상태, 수발 → 접수·발송 등)를 정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제 호

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제10호 중 “성상”을 “성질 및 상태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분류·수발·통제·관리”를 “분류·접수·발송·통제·관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 중 “시뮬레이션”을 각각 “모의실험(시뮬레이션)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(5급 4명)”을 “(4급 또는 5급 1명, 5급 3명)”으로 한다.
별표 3 총계 “208”을 “215”로 하고, 소방공무원 계 “181”을 “183”으로 하며, 소방위 “49”를 “50”으로 하고, 소방장 “11”을 “12”로 하며, 일반직 계 “27”을 “32”로 하고, 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1 다음에 “기술서기관·의무사무관 또는 소방령 1”를 신설하며, 의무사무관 또는 소방령 “4”를 “3”으로 하고, 행정주사 또는 소방경 1 다음에 “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4”를 신설하며, 간호주사보 또는 소방위 1 다음에 “전산주사보 1”를 신설한다.

별표 6의 119구조구급국 장비기획과의 평가기간란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1년 12월 31일까지”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에 유해화학물질 관리(중앙119구조본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유해화학물질 관리 (중앙119구조본부)	5명 (소방교 3명, 소방사 2명)	2020년 12월 31일까지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소방정책국) ① ~ ③ (생략)	제3조(소방정책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④ ----- -----.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위험물의 <u>성상</u> 조사·연구 및 위험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	10. ----- <u>성질 및 상태</u> ----- ----- --
10의2. ~ 17. (생략)	10의2. ~ 17.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5조(중앙소방학교) ① (생략)	제5조(중앙소방학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 ----- -----.
1. 서무·보안·비상계획·문서의 <u>분류·수발·통제·관리</u> 및 관인의 관리	1. ----- --- <u>분류·접수·발송·통제·관리</u> -----
2. ~ 11. (생략)	2. ~ 11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④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각종 재난현장 지휘·통제 교육·훈련과정설계 및 <u>시물</u>	2. ----- ----- <u>모의</u>

<u>레이션</u> 운영	<u>실험(시뮬레이션)</u> ----- -----
3. 지휘훈련 <u>시뮬레이션</u>, 화재조사 실습실 및 소방시설 실습실의 운용·관리	3. ----- <u>모의실험(시뮬레이션)</u>----- -----
4. ~ 14. (생략)	4. ~ 14.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9조(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생략)	제9조(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구급상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4명(<u>5급 4명</u>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(<u>4급 또는 5급 1명, 5급 3명</u>)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3]

소방청 공무원 정원표(제9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08</u>	<u>215</u>	+7
소방공무원 계	<u>181</u>	<u>183</u>	+2
·	·	·	
·	·	·	
소방위	<u>49</u>	<u>50</u>	+1
소방장	<u>11</u>	<u>12</u>	+1
일반직 계	<u>27</u>	<u>32</u>	+5
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	1		
<u>기술서기관 · 의무사무관 또는 소방령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의무사무관 또는 소방령	<u>4</u>	<u>3</u>	-1
행정주사 또는 소방경	1		
<u>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</u>	<u><신 설></u>	<u>4</u>	+4
·	·	·	
·	·	·	

간호주사보 또는 소방위	1		
<u>전산주사보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